BNIX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4-A-0488, 심의일: 2024.12.11, 유효기간 : 2026.12.31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 상품설명서

(2025.06.02)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

▶ 상품특징 : 주거래 고객을 위해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립식상품

2 거래 조건

☞ 이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구 분 | 내 용 | | | |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 | | |
| 가입금액 | 매월 1만원 이상 (최고 | 고 가입금액 제한없음 | ·) (정기정액적립식) | |
| 가입기간 | 1년제, 2년제, 3년제 | | | |
| 가입채널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고객센터 | | | |
| 기본이율 (연이율, 세전) | 계약기간 | 1년제 | 2년제 | 3년제 |
| | 연이율 | 2.50 | 2.35 | 2.35 |
| |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 | |

| | 우대항목 | 우대조건 | 우대이율 | |
|--------------------------|---|--|--|--|
| 우대이율 (연이율, 세전) | 주거래 우대 공과금 자동이체 신규고객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 적금 계약기간의 1/2이상 다음 중 하나의 주 거래 실적 보유시 ① 당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지정일자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에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② 당행 입출금통장에 BC, 삼성, 신한카드사 중 1개 이상의 가맹점 결제대금 ^{주1)} 입금 이 적금 계약기간의 1/2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에 서 공과금 자동이체 ^{주2)} 실적 보유시 ①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0.40% ② 공과금 자동이체 월 4건 이상:0.60% 가입일 기준, 직전 6개월 간 거치식/적립식예금 미보유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립식예금에서 제외) 이 적금 만기해지시점에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0.50% 0.40% 또는 0.60% 0.20% | |
| | 전자명함 신규 | 이 적금을 전자명함을 통해 신규시 | 0.20% | |
| | 최대 우대이율 - 1.60% 주1) 가맹점 결제대금: 당행 펌 이체방식에 의한 입금 건에 한함(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이체 건은 제외) 주2) 공과금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 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결제원CMS이체 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 제공하며, 중도해지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
| 최고이율 (연%, 세전) | ※ 우대이뮬는 인기에서서 제공하며, 중도에서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면 4.10% (1년제 기준, 우대이율 모두 포함) | | |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 | |
| 이자계산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1회차 2회차 3회차 ··· 마지막회차 (입금금액X약정이율X일수/365) (입금금액X약정이율X일수/365) (입금금액X약정이율X일수/365) : (입금금액X약정이율X일수/365) 만기일 | | | |
| 부가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 |
| 특별중도해지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중도해지이율 | | | | |
|--------------|---|---------------------------------------|---|---------------------------------------|--|
| |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 | | | |
| 중도해지이율 | | 사업기간 가입기간 | | 적용율 | |
| (연%, 세전) | | 6개월 미만 | | 50% | |
| (_ , , | 6개 등 | 월 이상 ~ 9기 | H월 미만 | 70% | |
| | 9개월 | 텔 이상 ~ 11 ⁷ | 개월 미만 | 80% | |
| | | 11개월 이 | 상 | 90% | |
| | ■ 만기후이율 | | | | |
| | 경과기간 | | 이 율 | | |
| 만기후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 | |
| (연%, 세전) | | | 일반성. | 기예금(만기지급식)기본이율 X 50%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 |
| | 만기후 1 | 개월 초과 | 일반정: | 만기시점 계약기간열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기본이율 X 20% | |
| | L * 이율은 소수 [:] |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 |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 | | |
| 예금담보대출 | 0 | O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 | | |
| 자동재예치 | x | 불 가 | | | |
| 자동만기해지 | 0 | 가 능 | | | |
| 분할해지 | х | X 불 가 | | | |
| 만기앞당김 | 0 가 능 | | | | |
| 원금 또는 | | | | | |
| 이자지급 제 | 이 예금에 압류, |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 | |
| 한 | | | | | |
| 양도 및 질권설정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 | | | |
| 마고 숙 | 만기일 또는 이 | 자지급을 포 | 함한 최종 거래 | 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시「예금거래기본 | |
| 만기 후 워크바버 | 약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출연된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 | | | |
| 처리방법 |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자동이체 | 월 적립한도 이L | 내에서 자동이 | 체 등록 가능 | | |
| 시중의세 | (자동이체 등록은 | 은 다른 금융호 | 회사에서도 가능 |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무통장거래 | 통장 신규시 종 | 이통장 발행 | · · · · · · · · · · · · · · · · · · · | 등(단, 법인 제외) | |
| 계약의 해지 | ▶ 영업점 창구 | , 인터넷뱅킹 | 김, 모바일뱅킹 | | |
|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 | | | |
| 위법계약 |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 | | |
| 해지권 | | | |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 |
| | / 깃으도 판단될 | 경구 구구 <u></u> 도 | 궁 계약애와 판 | 련한 추가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 해 당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3 유의 사항

- □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이 상품은 경남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용어 | 설명 |
|------|---|
|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 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 용됩니다. |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출연

어떤 사람이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